

특집

서울시의 한우전문 판매점 폐쇄조치의 문제점

김 인 식
본회 조직지도부장

흔히 정육점하면 쇠고기나 돼지고기 판매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전혀 저항감이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80년대 후반기 부터 쏟아져 들어온 수입쇠고기 때문에 또 하나의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름하여 수입쇠고기 판매점이 그것이다. 정육점은 으레 국산 쇠고기나 돼지고기가 팔려지게 마련이지만 수입쇠고기가 판을 치면서 여기저기서 국산 쇠고기로 둔갑되고 소비자를 혼란시키자 아예 수입쇠고기만 전문으로 팔도록 매장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장이 생겨났다고 하여 기존의 정육점은 전적으로 한우육만 취급하느냐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소비자들은 속지 않고 정육점에서 잘라주는 쇠고기를 한우육으로 거리낌없이 살 수 있느냐, 우리 소비자가 제대로 한우육의 진가를 알고 정육점을 다시 찾게 되느냐의 문제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백보 양보하여 영세한 시중 정육점에서 값싼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은 호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작은 양심을 속여도 너그럽게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손꼽는 유명백화점들이 버젓이 속여

파는데 혈안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과연 믿을 만한 판매장이 있다고 안심할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연말연시 특수기나 추석명절등 고객이 몰리는 철에는 으레 사기판매가 성행하여 연례적인 뉴스거리가 되고 검찰의 일거리를 보태주는 것이 예사일로 되었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그러려니 하는 단계이고 정육점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일로 쌓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한우육을 속지않고 사먹을 수 있는 유통 체계가 바로 우리의 관심거리임에 틀림없다.

시대적오적인 서울시의 행정조치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한우고기를 시중 정육점 어디서나 마음놓고 사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면 정말 우리 한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는 우리의 토착적인 입맛을 아직은 간직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고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 단기간의 한우시장확보와 생산기반 유지만은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지않고 제대로 한우고기를 살 수 있는 매장으로 착안한 것이 바로 한우고기전문 판매장이다. 말하자면 수입쇠고기는

알게 모르게 어디서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우 나라에서 한우고기는 안심하고 살 수 없으니 마음놓고 사 먹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될 것이다. 우리 쇠고기 유통체계의 모순과 부도덕성을 노출시키는 부끄러운 일면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한우고기와 수입육 혹은 젓소고기와의 시장차별을 하면서 냉장육유통으로 전환시킬 목적으로 한우전문판매장 사업을 개방에 대비한 의욕적인 정책사업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바로 이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이 서울시에 의해 불법사업으로 드러나게 되어 경악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미관지구내에서 정육점 설치 불가라는 각 구청의 건축조례규정을 들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그결과 소위 미관지구내에 있는 13개 한우전문판매점을 지정취소키로 하는가 하면 한우전문판매점 지정에 적극 관여하거나 추진한 공무원 24명을 징계조치키로 한 것이다. 또 이들 판매점에 용자된 축발기금마저 부당대출로 간주하여 환수토록 함으로써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사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기인된 전형적인 탁상행정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한우전문판매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서비스사업임이 분명하다. 시민이 속지않고 한우고기를 사먹도록 배려하는 일은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가 앞장서 한우사육농민 보호 차원에서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한다면 오히려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이를 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규의

개정등 세부사항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 묵은 건축조례를 꺼내어 미관지구내 건축불가조항을 내세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수입쇠고기 판매점이나 일반정육점등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고 한우전문판매점만 폐쇄조치키로 하였다. 농민이 분통을 떠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한우전문판매장 확대는 농림수산부와 양축가 입장에서는 농민보호 대책이지만 서울시민에게는 행정편의 내지는 생활개혁 과제가 될 수 있다. 미관지구만을 내세워 정부의 의욕적인 사업마저도 일시에 불법으로 간주되고 한우전문판매점 폐쇄와 함께 기용자된 축발기금도 부당대출로 처리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정부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성을 발휘한 공무원이 오히려 징계받는다면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상충부는 연일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고 있는데 반해 일선행정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모두가 따로 가고 있다는 생각만 가득하다. 세계화 이전에 한국화라도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시민보호와 농민을 위하겠다고 정부사업에 앞장섰던 공직자의 징계조치가 가뜩이나 우려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고착화 시킨다면 개혁은 요원한 느낌이다. 참으로 우려된다.

한우판매는 무식쟁이업으로 취급

이번 한우고기 전문판매점 폐쇄조치의 발단은 축협중앙회 사회사인 (주)한국축산유통이 관악구 신림본동 1641-90 소재에 지상건물 1층에 동판매점 시설을 완료하고 지난해 관악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관악구청에서는 미관지역에는 정육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수리를 거부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정육점 개설은 각 구청에 의견을 갖추어 신고하면 구청에서 신고를 접수받아 수리하게 되면 영업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이미 타구에서는 신고접수 처리를 하였거나 영업중이거나 하여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시 산하 구청별로 접수처리가 각각이라 어떤 구는 영업이 가능한 구가 있는가 하면 관악구의 경우 담당직원이 구청건축조례를 제시하며 한국축산유통에 정육점개설 불가통보를 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미관지구라는 것이 어떤 곳이길래 한우전문 판매장만 거부되는 것인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의 2(지구의 세분)에는 건설부장관이 미관지구를 토지이용도가 극히 높은 상업지역을 제1종 미관지구로,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은 상업지역을 제2종 미관지구로, 관광지 또는 사적지의 미관유지를 위해 제3종미관지구로, 한국고유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미관 유지를 위해 제4종 미관지구로, 도시미관유지를 위해 제5종 미관지구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미관지구와 관련, 관악구청 건축조례 제28조(용도제한)에서는 제1종 미관지구안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 「근린생활시설중 1층 도로변에 설치하는 정육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문제되는 것이 ① 1층 건물에 설치하고 ② 도로변에 인접하는 건물의 ③ 정육점이면 아니된다는 관악구청 건축조례 해석인 것 같다. 그러면 문제의 한국축산유통 매장이 건축조례에 현저히 위반될 시설요건으로 지적되었으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례상의 1층 건물이고, 도로변 5미터에 접하고, 그리고 정육점이니 해당되는 요건임에 분명하다. 그러면 정육점이 1층에 있지 않고, 도로변에 있지 않고 골목에 숨어 있거나 하는 예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육점도 고객을 유치하는 영업장이므로 1층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리고 크든 작든 도로와 인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왜 기존 정육점은 외면한 채 한우전문 판매장만 폐쇄 대상이 되었느냐가 의문이다. 서울시에 강력히 항의하고 질의하여도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

조례규정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미관지구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정육점 개설로 인해 시가지 미관을 해친다거나 혐오감을 유발시키거나 혹은 시민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부정적요인이 발생된다면 서울시의 어떠한 처분도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법이라는 것이 일반의 상시적 개념을 규정화하여 구속력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서울시의 이번조치는 바로 몰상식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우판매는 종전의 푸줏간으로 여겨 천하의 무식장이가 하는 업

로 치부하는 것 같다. 아니라면 깊은 의혹을 떨구칠 수 없다. 왜냐하면 한우전문 매장을 기존의 정육점과는 전혀 다른 신선한 이미지를 시민에게 부각시켜 거의 획기적인 판매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외부에서 보았을 때 시각적인 인상을 끌기위해 깔끔하고 깨끗한 외장을 하고 있고, 내부면적도 기존 정육점으로서로는 엄두도 낼 수 없을 만큼 넓은데다 위생적인 시설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현대식 슈퍼형태로 단장하고 있거나와 정육쇼케이스나 냉동·냉장고, 기타 내부 진열대 등은 고객을 끌기에 충분할 정도이다. 오히려 다른 상점이나 슈퍼, 편의점 등에 뒤지지 않는 현대화된 모습을 시민에 선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아도 무리없는 평가일 것이다. 서울시가 적극 권장하고 미관지구내의 「미관조성」이 시민편의 차원에서 제도적인 혜택을 주어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마땅할 것이다.

쇠고기판매업은 외형상 정육점, 식육점, 식육판매점, 수입쇠고기 판매점, 한우고기 판매점등 다양하나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줄 때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식육판매업」으로 업종을 명기하고 있다. 구청장이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에는 식품위생법

쇠고기판매업은 외형상 정육점, 식육점, 식육판매점, 수입쇠고기 판매점, 한우고기 판매점 등 다양하나 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발급해 줄 때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식육판매업」으로 업종을 명기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의문이면서 서울시가 답변을 않고 있는 부문이 왜 하필 한우전문판매점이 거부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다른 정육점이나 식육점, 식육판매업, 수입쇠고기 판매업 등의 명칭을 갖추고 있는데는 1층 건물이고, 도로변에 접하고 정육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미관지구라고 폐쇄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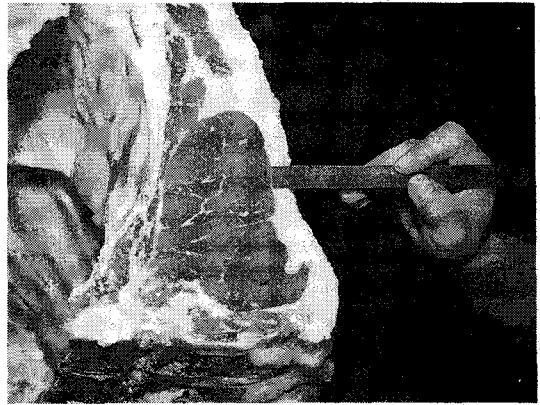
을 들어 식육판매업으로 정식 발급하면서 사실상 형태와 명칭이 다양하게 되고 있고 법상에는 규정조차 되어 맞지 않는 「정육점」이 서울시 자치구 조례에 그것도 건축법 관련 조례에 있다하여 신고를 거부한다니 오히려 법적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본다. 영업신고 수리 및 증명은 식품위생법하면서 건축조례를 갖다 붙혀 한우판매를 차단하려는 고의성이 있음을 의심케 한다. 오히려 서울시 행정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다.

설령 1층 도로변에 설치한다 해도 식육의 진열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고 도로에 접하지 않으며 미관이나 시설등이 시민대중이 볼 때 무난하다는 판단이면 접수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본다. 가장 큰 의문이면서 서울시가 답변을 않고 있는 부분이 왜 하필 한우전문판매점이 거부 대상인가 하는 점이다. 다른 정육점이나 식육점, 식육판매업, 수입쇠고기 판매업 등의 명칭을 갖추고 있는데는 1층 건물이고, 도로변에 접하고 정육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미관지구라고 폐쇄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나 하는 점이다.

서울시 의원의 한심한 자질

이번 사건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각성해야 할 과제를 다시 발견하는 듯 했다. 같은 국민이면서, 눈으로 보고 직접 한우매장에 가서 고기한근 사면 저절로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렇게 비화되고 피해가 크게 나타나기 까지 문제를 제기한 주인공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관악구청에서 한국축산유통에 불가통보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주장이 맞서자 관악구출신의 서울시 의회 김수복 의원이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건설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수복의원이 지난해 11월 17일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유인물을 입수해 보고는 참으로 놀라왔다. 자료중에 자극적인 용어나 공격적인 내용등에 대해 따질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우전문판매점을 불법허가로 단정하여 허가를 취소할 것과 축산발전기금을 불법대출로 규정하여 즉각 환수하라고 하는가 하면 관계관을 엄단하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찔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건설위원 입장에서 건축분야가 전문이므로 건축조례를 들어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공평성이 전제되어야지 건축미관을 갖추게 도와주는 한우전문판매장만을 거론하여 허가취소를 들고 나오는지 의문이다. 또 한우전문매장 폐쇄로 인해 야기될 서울시민의 불이익과 상대적으로 판칠 수입육판매 농간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없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특정인에 대한 문제제기로 명예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 김수복의원 주장이 서울시를 향한 당당한 의사발언이고 문제 제기되었다면 한국낙농육우협회나 전국농민단체 농정감시회의 명의의 성명서 발표에 공식 입장을 표시했어야 함에도 침묵을 지켜온 사실이다. 물론 협회나 농민단체들은 농민대변을 자처하는 민주당과 소속국회의원들에게 진상조사와 대책제시를 강력히 요청하였었다. 만약 정육점들의 요청에 의해 인기관리측면에서 정치적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비난과 수치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누구나 쉽게 거론하는 수입개방대책을 입으로만 들먹이면서 행동은 엉뚱하다면 개인이든 정당이든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결국 서울시의 조치가 김수복의원의 지적에서 비롯되고 각 구청별로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에 적극적인 공무원이 된서리를 맞은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리 의원의 주장이 무섭고 골치아픈 일이라 하더라도 현실 상황과 명백한 괴리가 있음에도 거기에 따르고 순응하는 서울시의 조치를 두고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다. 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가자 서울시는 구청 건축 조례개정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를 제기하거나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시정되지 않는 행정이라면 농민단체 과제가 더 늘 수밖에 없다.

정부사업의 홍보미흡

본격적인 수입쇠고기 잠식에 대비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있는 대응책중의 하나가 한우전문판매장일 것이다. 아무리 수입육이 쏟아져 들어와도 소비자가 우리 한우고기를 선호하여 찾게된다면 확실한 안전대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시·도지사가 주체가 되어 축협, 농협중앙회, 한우생산업체와 영농종합법인, 한국농장, 한국축산유통, 축산관련협, 백화점 협회 및 슈퍼체인 협회 회원사와 일반 식육판매업소등이 사업대상이 되어 300억원의 지원계획을 추진하였다.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의 융자조건으로 하여 축협, 한농, 축산유통은 연리 3%로, 농협중앙회와 협업체 및 축산관련협회는 5%로, 그리고 민간은 연리 8%로 차등 금리조건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료육 즉 한우 구입 및 판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시장, 준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시장군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대상자 선정을 요청하게 되고 이에 시도지사가 대상자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부와 해당 시·군, 그리고 축협중앙회에 통보하여 자금이 융자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정절차나 시설기준, 사업단가나 지원기준 그리고 사업관련 제반규정이 빈틈없이 정해져 있어 정부 정책사업 추진이 헛점이 없도록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욕적인 농림수산부의 한우유통개선 사업이 일선 행정의 조례에 부딪혀 물의가 빚어진다 대해서는 개운찮은 느낌이다. 정부 주도사업이 소비자와 농민보호 그리고 유통체계의 개선이라는 명분이 분명함에도 말단 행정에서 거부될 수 있다면 뭔가 헛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구청조례와의 상충성 때문이라면 조례개정을 전제로 일시 유보한다는 단서라도 있었다면 그나마 이해될 수 있다. 정부사업에 적극적

인 일선 공무원이 상대신 벌을 받았어도 주무부처가 침묵해야 되는지 속사정을 이해할 수 없다.

한우전문판매장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개설되고 있어 한우사육농가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특성있는 상표가 선보이고 소비자들에게 신선감을 던져주고 있어 껍이나 고무적이다.

농가에서 값싸게 팔리는 젓소가 제대로 가치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상대적으로 한우의 유통개선이 있다면 젓소 전문매장 설치는 시급하다. 우수소비량 확대에 맞추어 젓소 사육두수는 늘기 마련이고 그만큼 한우로 둔갑되어 팔리자면 아무리 한우 매장 확대사업을 강조해도 개선은 어렵게 된다. 최소한 낙농관련 조합만은 젓소 전문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젓소가격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낙농기도 소비자도 손해보고 있는 현재 상황의 극복이 빨라질수록 쉽게 정착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소비량중 한우전문판매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보잘 것 없다면 이제 시작단계로 보아 적극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수만개의 일반 정육점이 존재함에도 굳이 한우전문판매장으로 간판을 건다면 기존 정육점에 대한 불신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우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시대적인 중요성을 행정담당자나 유통업체 종사자 그리고 우리 농민 모두가 공감하도록 홍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의 기본축종인 한우를 지키는 것이 이나라 축산업을 지키는 중요성으로 이해한다면 관련종사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산 젓소고기와의 유통체계가 정립되어

야 한다.

상대적으로 값싼 젓소가 한우육으로 둔갑되어 시판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는 없다. 즉 수입육이나 젓소 고기가 한우로 둔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우전문매장은 장려하면서도 젓소고기 전문 매장은 없다. 젓소고기 전문매장설치는 한우전문매장 이상으로 중요하다. 서울시내 정육점 대부분이 한우고기 취급한다는 선전은 하면서도 젓소고기 취급한다고 알리는 곳은 찾을 수 없다. 알고도 속아넘어가는 도리밖에 없다.

농가에서 값싸게 팔리는 젓소가 제대로 가치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상대적으로 한우

의 유통개선이 있다면 젓소 전문매장 설치의 시급하다. 우유소비량확대에 맞추어 젓소 사육두수는 늘기 마련이고 그만큼 한우로 둔갑되어 팔려간다면 아무리 한우매장 확대사업을 강조해도 개선은 어렵게 된다. 최소한 낙농관련 조합만은 젓소 전문매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젓소가격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낙농가도 소비자도 손해보고 있는 현재 상황의 극복이 빨라질수록 쉽게 정착될 수 있다. 본격적인 쇠고기 수입자유화 조치 시점에는 젓소가격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일본의 예로 이미 드러났다. 낙농단체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방안 강구가 있어야 한우도 젓소도 유통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초지대리 이용 관리자 모집공고

제천시 공고 제 95-27호

초지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리관리자를 지정코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초지

(면적단위 : ha)

초 지 소 재 지		조 성 현 황		임 야 소 유	초 지 관 리 자		지 정 사 유
면	리 지 번	년도	면적		주소	성명	
	봉양 마곡 34-5	85	9	시유 립	제천시	김범태	초지를 관리이용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음.
	34-6	86	3		고암동		

- 본 공고의 게재기간 : 1995. 2. 13 ~ 2. 22 (10일간)
- 대리관리자 신청기간 : 1995. 2. 23 ~ 3. 14 (20일간)
- 대리관리자 신청자격 : 축산업을 자영코져 하는 자로 초지를 성실히 관리하고 기준 두수의 가축을 입식할 능력이 있는자.
- 기타 문의 : 제천시 축산과 (☎ 40-6392)

1995. 2. 13.

제 천 시 장